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조직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만성질환총괄과,”를 “만성질환관리과,”로 하고,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성질환총괄과장”을 각각 “만성질환관리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리사업”을 “예방관리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제2항 본문 중 “만성질환관리과를”을 “만성질환사업과를”로 하고,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성질환관리과장”을 각각 “만성질환사업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만성질환관리국) ① ~ ③ (생략)	제13조(만성질환관리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만성질환관리국에 <u>만성질환총괄과</u> , 만성질환예방과, 희귀질환관리과, 건강영양조사분석과, 손상예방정책과, 기후보건·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를 두되, <u>만성질환총괄과</u> 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, 만성질환예방과장, 희귀질환관리과장,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, 손상예방정책과장 및 기후보건·건강위해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,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④ ----- <u>만성질환관리과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만성질환관리과</u> 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<u>만성질환총괄과</u>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<u>만성질환관리과</u> 장----- -----.
1. <u>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2. 만성질환 <u>관리사업</u> 의 기획·조정	2. ----- <u>예방관리사업</u> ----- --

② 질병대응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센터”라 한다)에 운영지원과·감염병대응과·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관리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,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, 만성질환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

<삭 제>

<삭 제>

② _____

-- 만성질환사업과를 -----

----- 만성질환사업과장 -----

----- 만성

질환사업과장-----

관·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	-----
③ ~ ⑤ (생략)	-----.
⑥ <u>만성질환관리과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1. ~ 9. (생략)	⑥ <u>만성질환사업과장</u> -----
⑦ (생략)	-----.
	1. ~ 9. (현행과 같음)
	⑦ (현행과 같음)